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98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이만희·박성민·조명희

이인선 • 윤두현 • 이명수

엄태영 · 정점식 · 허은아

유상범 · 최재형 · 한무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재 2천여명 이상의 산림치유지도사가 양성되어 산림치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 고시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 중에 있으나,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산림휴양법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업무 위탁조항을 신설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또한 산림욕장등을 조성한 자가 산림욕장등을 다른 산림휴양시설로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현행 법령상 처리 규정이 없 어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승인 받은 자가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자율성 보장 및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함(안 제21조).

법률 제 호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 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
	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20조	취소 등) ①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	
획의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	
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조
	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